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6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용혜인・민병덕・소병훈

윤종군 • 김남희 • 김교흥

신정훈 • 김성환 • 서영교

윤종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또한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가로막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.

이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,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 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(안 제143조 및 제144조 등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3조 중 "회기 중 국회의"를 "국회의"로, "국회 안에서 경호권을"을 "경호권을"로 한다.

제144조의 제목 중 "경찰관"을 "경비대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경위(警衛)를"을 "경위(警衛)와 경비대(警備隊)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경찰공무원의 파견"을 "경찰공무원을 경비대로 파견하도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경호업무는"을 "경위와 경비대(제2항에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)는"으로, "수행하되"를 "경호업무를 수행하되"로, "경찰공무원은"을 "경비대는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경비대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경위와 경비대 등의 운영과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0조 본문 중 "경찰공무원은"을 "경비대(제144조제2항에 따라 파견 된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)는"으로 한다.

제153조제2항 중 "경찰공무원으로"를 "경비대(제144조제2항에 따라 파

견된 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)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3조(의장의 경호권) 의장은	제143조(의장의 경호권)
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	<u>국회의</u>
기 위하여 <u>국회 안에서 경호권</u>	<u>경호권을</u>
<u>을</u> 행사한다.	
제144조(경위와 <u>경찰관</u>) ① 국회	제144조(경위와 <u>경비대</u>)
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<u>경위</u>	
(警衛)를 둔다.	<u></u> 경위(警衛)와 경비대(警備隊)
	<u> </u> =
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	②
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	
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	
간을 정하여 정부에 <u>경찰공무</u>	<u>경찰공</u>
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.	무원을 경비대로 파견하도록
③ <u>경호업무는</u> 의장의 지휘를	③ 경위와 경비대(제2항에 따
받아 <u>수행하되</u> , 경위는 회의장	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을 포함
건물 안에서, <u>경찰공무원은</u> 회	한다)는
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.	<u> 경호업무를 수행하되</u>
	<u></u> 경비대는
<u><신 설></u>	④ 경비대는 제1항의 업무를
	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
	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

<신 설>

제150조(현행범인의 체포)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 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. 다 만,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 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 다.

- 제153조(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) ① (생 략)
 - ② 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 나 <u>경찰공무원으로</u> 하여금 방 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	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.
	⑤ 그 밖에 경위와 경비대 등
	의 운영과 업무분장 등에 필요
	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
	<u>다.</u>
제	150조(현행범인의 체포)
	-경비대(제144조제2항에 따라
	파견된 경찰공무원을 포함한
	<u>다)는</u>
제	153조(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)
	① (현행과 같음)
	②
	<u>경비대(제144조제2항에 따</u>
	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을 포함
	한다)로